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·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21. 10. 27.

행정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1년 10월 8일

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1년 10월 13일

라. 상정일자: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(2021. 10. 22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행정지원국장 이형삼)

가. 제안이유

- 통장 미위촉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장 연임 및 모집기준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고, 행정의 최일선에서 위기가정 발굴 등 대민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통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돌봄체계를 강화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통장 연임에 관한 규정 정비 (안 제4조)

- 통장 모집기준 확대 및 조문 체계 정비 (안 제5조)
- 통장추천심의위원회 규정 정비 (안 제5조의2)
- 통장 복지업무지원 활동비 지급 규정 신설 (안 제11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#### ○ 본 조례안은

- 통장 연임 및 모집기준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고, 위기가정 발굴 등 대민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통장에게 복지업무지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

#### ○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

- 안 제4조는 통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으로 현행 임기 3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하던 것을 제2항을 신설하여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.
- 안 제5조는 통장의 위촉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해당 통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주민에서 제2항제2호를 신설하여 “해당 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, 사업자등록을 한 지 3년이 경과한 사람”까지 확대하고 단서조항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의 경우 2회 이상 공개모집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였음.
- 안 제11조는 통·반장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과 비교하여 통장의 복지업무 지원 활동비를 신설하였음.

#### ○ 검토 결과

- 통장에 대한 임기와 위촉 기준을 완화하고 복지업무지원 활동비를 신설하여 통장 공

석에 따른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통장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, 통장의 임무와 자격사항 등 검토 시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#### 4. 수정안 요지

##### 가. 수정이유

- 해당 조례안의 통장에 대한 위촉 기준을 완화하여, 통장 공석에 따른 행정 공백을 최소화 하고, 복지업무지원 활동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함.

##### 나. 수정내용

-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고, 제4조는 현행대로 하며,
- 안 제5조제2항제1호 중 “30세 이상”을 “해당 통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25세 이상”으로 하며,
- 안 제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,
- 안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안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하며,
- 안 제5조제2항제3호 중 “연임(제4조제2항의 추가 연임을 포함한다)”을 “연임”으로 하고,
- 부칙 “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”를 “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”로 하고,
- 비용추계서 중 월 2만원을 1만원으로 수정함.

#### 5. 심사결과: 수정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·반설치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390	관련 번호
----------	-----	----------

제안연월일: 2021. 10. 22.

제안자: 최봉희 의원 외 1명

### 1. 수정이유

- 해당 조례안의 통장에 대한 위축 기준을 완화하여, 통장 공식에 따른 행정 공백을 최소화 하고, 복지업무지원 활동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함.

### 2. 수정내용

-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고, 제4조는 현행대로 하며,
- 안 제5조제2항제1호 중 “30세 이상”을 “해당 통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25세 이상”으로 하며,
- 안 제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,
- 안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안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하며,
- 안 제5조제2항제3호 중 “연임(제4조제2항의 추가 연임을 포함한다)”을 “연임”으로 하고,
- 부칙 “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”를 “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”로 하고,
- 비용추계서 중 월 2만원을 1만원으로 수정함.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·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·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고, 제4조는 현행대로 하며, 안 제5조제2항제1호 중 “30세 이상”을 “해당 통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25세 이상”으로 하며, 안 제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, 안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안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하며, 안 제5조제2항제3호 중 “연임(제4조제2항의 추가 연임을 포함한다)”을 “연임”으로 하고, 부칙 “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”를 “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”로 하고, 비용추계서 중 월 2만원을 1만원으로 한다.

## 수정안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4조(통장의 임기)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4조(통장의 임기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<u>2회 이상의 공개 모집 후에도 통장후보자 신청서를 제출한 자(이하 “지원자”라 한다)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하여 추가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4조(통장의 임기) (현행과 같음)</p> <p>① (삭제)</p> <p>② (삭제)</p>
<p>제5조(통장 및 반장의 위·해촉) ① (생략)</p> <p>② 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통장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.</p>	<p>제5조(통장 및 반장의 위·해촉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, 통장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-----.</p>	<p>제5조(통장 및 반장의 위·해촉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1. 해당 통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주민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이며 지도능력이 있는 자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1. 30세 이상</p> <p>2. 해당 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, 사업자등록을 한 지 3년이 경과(단,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의 경우 2회 이상 공개모집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)</p> <p>3. 제4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</p> <p>4. 연임(제4조제2항의 추가 연임을 포함한다)으로 인한 임기 만료 후 3년이 경과</p>	<p>1. 해당 통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25세 이상</p> <p>2. 삭제</p> <p>2. 제4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</p> <p>3. 연임으로 인한 임기 만료 후 3년이 경과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</p>	<p>부칙 (현행과 같음)</p>	<p>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

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·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·반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고, 제4조는 현행대로 한다.

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통장추천심의위원회  
회의 심의를”을 “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, 통장  
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  
은 항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삭  
제한다.

1. 해당 통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25세 이상
2. 제4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
3. 연임으로 인한 임기 만료 후 3년이 경과

제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 
하며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동장이 추천할 통장후보자의 심의·의결을 위하여, 동에 통장추천심의위원  
회를 둔다.
- ② 통장추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(종전의 제1항)  
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통장: 수당, 상여금, 복지업무지원 활동비

2. 반장: 상여금 또는 보상품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통장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장은 이 조례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임명된 통장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하고, 연임 시 임기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통장의 임기) (생 략)</p>	<p>제4조(통장의 임기) (현행과 같음)</p> <p>① 삭제 ② 삭제</p>
<p>제5조(통장 및 반장의 위·해촉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통장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.</p> <p>1. 해당 통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주민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이며 지도능력이 있는 자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③·④ (생 략)</p> <p>⑤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 또는 제5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위촉 해제된 통장은 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 위촉할 수 없다.</p> <p>제5조의2(통장추천심의위원회)</p>	<p>제5조(통장 및 반장의 위·해촉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, 통장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-----.</p> <p>1. 해당 통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25세 이상</p> <p>2. 제4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</p> <p>3. 연임으로 인한 임기 만료 후 3년이 경과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제5조의2(통장추천심의위원회) ①</p>

<신 설>

동에 통장추천심의위원회를 두  
며 통장추천심의위원회의 구성  
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  
으로 정한다.

제11조(수당 등) ① 구청장은 예  
산의 범위에서 통장에게 수당과  
상여금을, 반장에게는 상여금  
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 
날부터 시행한다

동장이 추천할 통장후보자의 심  
의·의결을 위하여, 동에 통장  
추천심의위원회를 둔다.

② 통장추천심의위원회의 구성  
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  
으로 정한다.

제11조(수당 등) 구청장은 예산의  
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 등  
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통장: 수당, 상여금, 복지업무  
지원 활동비

2. 반장: 상여금 또는 보상품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 
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1조  
의 개정 규정은 2022년 7월 1일  
부터 시행한다.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·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390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1. 10. .  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통장 미위축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장 연임 및 모집기준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고, 행정의 최일선에서 위기가정 발굴 등 대민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통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돌봄체계를 강화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통장 연임에 관한 규정 정비(안 제4조)
- 나. 통장 모집기준 확대 및 조문 체계 정비(안 제5조)
- 다. 통장추천심의위원회 규정 정비(안 제5조의2)
- 라. 통장 복지업무지원 활동비 지급 규정 신설(안 제11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참고
- 다. 협의사항
  - 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  - 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- 라. 입법예고(2021. 9. 9. ~ 9. 29. / 20일 간) 결과: 의견 없음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·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·반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2회 이상의 공개모집 후에도 통장후보자 신청서를 제출한 자(이하 “지원자”라 한다)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하여 추가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통장추천심의위원회 심의를”을 “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, 통장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.

1. 30세 이상
2. 해당 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, 사업자등록을 한 지 3년이 경과(단,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의 경우 2회 이상 공개모집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)
3. 제4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
4. 연임(제4조제2항의 추가 연임을 포함한다)으로 인한 임기 만료 후 3년이 경과

제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

하며, 같은 조 제2항(총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동장이 추천할 통장후보자의 심의·의결을 위하여, 동에 통장추천심의위원회를 둔다.

② 통장추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(총전의 제1항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통장: 수당, 상여금, 복지업무지원 활동비
2. 반장: 상여금 또는 보상품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통장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총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장은 이 조례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임명된 통장의 임기는 총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하고, 연임 시 임기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통장의 임기) (생략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4조(통장의 임기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<u>2회 이상의 공개모집 후에도 통장후보자 신청서를 제출한 자 (이하 “지원자”라 한다)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하여 추가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5조(통장 및 반장의 위·해촉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<u>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통장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.</u></p> <p>1. <u>해당 통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주민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이며 지도능력이 있는 자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5조(통장 및 반장의 위·해촉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-----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, 통장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-----.</u></p> <p>1. <u>30세 이상</u></p> <p>2. <u>해당 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, 사업자등록을 한 지 3년이 경과(단,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의 경우 2회 이상 공개모집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)</u></p> <p>3. <u>제4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</u></p>



<신 설>

③·④ (생략)

⑤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 또는 제5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위촉 해제된 통장은 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 위촉할 수 없다.

제5조의2(통장추천심의위원회)

<신 설>

동에 통장추천심의위원회를 두며 통장추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1조(수당 등)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장에게 수당과 상여금을, 반장에게는 상여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.

4. 연임(제4조제2항의 추가 연임을 포함한다)으로 인한 임기 만료 후 3년이 경과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제5조의2(통장추천심의위원회) ①

동장이 추천할 통장후보자의 심의·의결을 위하여, 동에 통장추천심의위원회를 둔다.

② 통장추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1조(수당 등)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통장: 수당, 상여금, 복지업무 지원 활동비
2. 반장: 상여금 또는 보상품